

공정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목)부터 18일(토)까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수령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도입 운용하고 있는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96년도 토건도급순위 상위업체 200개사 중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평가 A등급 77개사와 26개 부도 또는 법정관리업체, 그리고 표창업체 1개사를 제외한 96개 하도급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결과 업체수를 기준으로 볼 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완전이행업체는 전체의 9%인 8개사에 불과했고, 일부를 이행한 업체는 전체의 49%인 44개사, 미이행업체는 42%인 3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총 보증대상금액인 11,709억원 중에서 실제보증한 금액이 30.2%인 3,542억원에 불과하며, 공사수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총 보증 대상 하도급공사 6,453개 중 1,709개사로 전체 공사 수의 26%에 대해서만 보증이 이루어져 동 제도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금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가 지난 '97년 6월 30일 완료되어 동 제도가 사실상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초기의 업계 인

식부족 내지는 보증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건설공제조합등의 보증기관들이 대금지급보증요건을 강화·운용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부진으로 이를 수용할 업계의 추가담보나 자금여력 등이 부족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건설교통부와 건설공제조합, 건설협회 등과의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통해 부진사유를 해소해 나감과 동시에 일부이행하거나 미이행한 업체 등의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도시행 초기로서 시행상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97년 12월 30일까지 이를 자진해서 이행토록 하되, 동 유예기간까지 시행을 완료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하였다.

〈참고〉

◆ 조사대상 90개 사업자별 조치내용

• 무혐의[8개사]

삼성중공업(주), LG엔지니어링(주),
(주)아시아나항공, (주)한성,
현대중공업(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영풍산업(주), 삼보종합건설(주)

• 이행촉구[82개사]